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0. . .
발 의 자	이선우 의원 외 6명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선우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 .

발 의 자 : 이선우 · 김재우 · 김춘남 · 안장환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의원(7인)

1. 제안이유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규정 부재에 따른 예산낭비와 관리부실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안 제4조)
- 다.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안 제6조)
- 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제8조)
- 마.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등(안 제10조~제12조)
- 바. 공공조형물의 관리(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구미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 및 설치예정인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과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동상·상징탑·기념비 등)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설치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 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설치신청) 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구미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③ 제2항에 따라 설치신청한 공공조형물을 구미시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설치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6조에 따른 구미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구미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3.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각중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
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여부
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심의 예외) 제4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의 보수와 보존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

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관리계획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대상지와의 관 계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 망 일	
	주요업적개요			
설치대상 (기타 조형물)	명 칭			
	설 치 위 치			
	규 모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①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설치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설 치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사업개요

가. 기 간

나. 위 치

다. 규 모

라. 모형 또는 형태

마. 재 질

4. 작품설명

5. 제 작 자(성명, 연락처, 주요경력 등)

6. 사 업 비(조달계획 포함)

7. 사후 관리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칭		설치일자	
위치 (공공시설명)		형상	
구조			
규격			
설치주체		관리부서	
설치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공공조형물의 위치(배치)도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5 " × 7 ")
